

## 4. 地方稅法中 改正法律

법률 제5,406호 1997. 8. 30

### 주요 골자

- 가.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납부제도를 각각 신설함(법 제65조 내지 제71조).
- 나.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하여서도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의 부과·징부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보완하고, 시·군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잘못된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충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72조 내지 제81조).
- 다.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에 있어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합원에게만 과세하도록 함(법 제105조제10항).
- 라. 지방세 감면규정(제5장)의 적용시한이 1997년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농어민 등 서민들의 생활안정,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감면 할 수 있도록 감면시한을 2000년까지 3년간 연장함(법 부칙 제2조).

## 개정이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세목·세율 등 실체적 요소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등 과세행정상의 절차적 요소까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1997년말에 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제도를 재조정하여 농어민등의 생활안정, 중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면에서 지원을 유지·강화하되,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기타 일부 세목의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지방세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호중 “충당, 부과외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충당 또는 부과외 취소가 있는 때”로 한다.

제30조의6제2항중 “다시 진행한다”를 “새로 진행한다”로 한다.

제1장제11절의 제목 “보칙”을 “서류의 송달등”으로 한다.

제5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연체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체납세의무자 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

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체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58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 및 제12절(제67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장에 제12절(제65조 내지 제71조)·제13절(제72조 내지 제81조) 및 제14절(제82조 내지 제85조)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2 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 65 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6조 내지 제69조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 66 조(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67 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

며, 제출한 서류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68 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대상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세무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

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9 조(비밀유지등)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국가기관이 조세소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 70 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납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된 내용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 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71 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

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 13 절 이의신청등

제 72 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지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 73 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토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4 조(심사청구) 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 75 조(청구기한의 연장등)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및 심사청구서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제73조·제74조·제80조 및 제8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 76 조2(보정요구) ① 제73조·제74조 및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제77조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77 조(결정 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

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내무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이 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8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제 79 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또는 심의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0 조(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81 조(행정소송) ①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 14 절 보 칙

제 82 조(국제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기본법과 국제징수법을 준용한다.

제 83 조(국고금단수계산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은 준용한다.

제 84 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의 준용) ①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범칙행위의 처벌에 있어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령 중 국제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특별시·도·광역시 또는 구·시·군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특별시장·도지사·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로 한다.

제 85 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행위 또는 업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04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 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과 단서 및 동조제5항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하고, 동조제6항중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점주주”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점주주(법인설립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

외한다)”로,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제2호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선박”으로 한다.

제108조 본문 및 단서 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110조제1호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호의 2 및 제1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본문중 “건설기계”를 각각 “기계장비”로 한다.

제112조제1항중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

정할 수 있다.

제102조제1항중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을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로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로 한다.

제127조제2호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선박”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147조를 삭제한다.

제163조제2항 본문 및 동항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제16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면허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군납업·건설업의 면허

제1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단서중 “시·군”을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으로 한다.

①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2.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장 주소지
3. 법인 : 사업장 주소지

제177조의2제1항 본문중 “경정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을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30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그 신고일”을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제183조제1항을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제188조제1항중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96조의6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19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96 조7(납세의무의 승계) 자동차를 매매등으로 승계취득한 자는 제196조의 6에서 규정하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제196조의6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다)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제196조의8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분기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9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유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234조의1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토지
2.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토지

제4장 제4절에 제2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0조(소액부징수) 지역개발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61조제2항중 “고정식온실”을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제263조제2항중 “면제한다.”를 “면제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99만제곱미터이내의 것에 한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264조제1항 본문중 “임업협동조합”을 “임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으로, “농어민”을 “농어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농민”을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65조의 제목“(농촌주택개량등을 위한 감면)”을“(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농촌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농촌지역)”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으로 한다.

제266조제2항중 “농업기반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를 “농업기반시설용토지와 그 시설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회원의 지도·지원사업, 회원의 공동이용시설 사업 및 신용사업에 한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3.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4. 임업협동조합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2조에 규

정한 사업

6. 인삼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⑥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업회사법인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촌회사법인·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농지개발조합법”으로 하고, “고유업무”를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록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5항 중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법인등기”로 한다.

제2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등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자

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한다.

제269조에 제5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업자와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⑥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해양오염방제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양오염방제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⑦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합에너지회관용 부동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⑧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제10호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새마을운

동조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가 동법 제70조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내지 제9호 내지 제83조의18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0조제2항중 “의료·재활등 고유업무”를 “고유업무”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2조(신문·통신업에 대한 감면)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문 및 통신업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3조(국민연금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의 국민연금관리업무(국민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③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이 의료보험관리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④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산의 증식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의료보험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경찰공제회가 당해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⑦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⑧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및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76 조(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산업단지내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부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 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공업배 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 우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45조의7제3항제4호 및 동항제6호 의 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 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벤처 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277조의 제목중 “관광단지개발”을 “관 광단지개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 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 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 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 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 유없이 그 사업에 적극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 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를 추징한다.

제280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⑥ 대외무역법 제4조제2항제2호의 규 정에 의한 무역관련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한국무역협회가 2000년 아시아· 유럽정상회의장용으로 신축·증축하거 나 개축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 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⑦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3조제1항제2 호에 규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신기술사업금융지 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

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신용보증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⑧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한 공동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⑨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제112조제3항·제138조제1항 및 제188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6조를 삭제한다.

제28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고속철도본선·정거장·차량기지·정비장·궤도부설전진기지 및 송전선시설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90조제1항 본문 단서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2호 내지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19

호를 제12호로 한다.

11.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제290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제29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관리사업(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행하는 동법 제6조제2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행하는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 사업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직업훈련시설 설치·운영사업  
제291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3.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5.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6.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7.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8.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제5장제7절에 제29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95 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장의 규

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5장의 개정규정(제263조·제274조·제267조제5항·제268조·제269조제5항 및 제6항·제272조제1항·제273조제6항·제276조·제27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시한) 제5장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 3 조(연체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항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수정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 5 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적용례) 제72조 내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 6 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